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727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4.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변경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를 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방법등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으며 기타 관계법령 조항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5월1일을 6월1일로 변경하고, 기존 납기는 제1기분 자동차세와 중복 되어 일시에 납세부담이 크므로 이를 분산시키고자 6월16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로 납기를 변경함.(안 제28조)

나.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상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제2항 신설)

다.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에 있어서 중간예납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기한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일치되도록 변경함.(안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라. 건축물이 과세대상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일치 되도록 변경함(안 제91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한다.

제28조중 “5월”을 “6월”로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제42조의4제2호중 “제141조의2”를 “제248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영 제15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제3항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하며, 제4항중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을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2조중 “1월”은 “5월”로 하고,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한다.

제54조 내지 제64조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60조중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호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1조중 “세액이 그 세액에”를 “세액에 그 세액의”로 한다.

제7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제7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 940-4220
	시 세 담 당	이 용 석 ☎ 940-4238
	담 당 자	정 삼 섭 ☎ 940-42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 조례 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 세” 라 함은 지방세 본세 1건당 30 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며 1건당 금액에는 지방세의 가산세 및 가산 금과 국세를 제외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 -----제6조의2제2호----- ----- ----- ----- ----- -----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 - - - - - - 6월 - - - - - - - - -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
제38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신 설>	제38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2조의4(신고납부) <생략>	제42조의4(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1. <생략>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제248조 - - - - - - - - - -
제47조(과세표준)① < 생 략 >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15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 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과세표준)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제152조 - - - - - - - - - - ③ - 영제153조 - - - - - ④ - 월합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 - - - - - - - - -
제50조(중간예납)①영제162조의 규정에 서 " 연2회 시 조례에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기분 :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 삭 제 >

현행	개정
2.제2기분: 8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업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업소득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에납하여야 한다. 1.제1기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2.제2기분: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에납이나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2조(신고와 납부)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와 납부)① - - - - - - - - - - 5월 - - - - -영 154조 - - - - - - - - - - - - - - - - -
제5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라 <생략>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4조(과세대상) ① - - - - - - - - - 담배- - - - ② - - - - - 담배- - - - - - - - 1. - - - - 담배 가~라 <현행과 같음> 2. - - - 담배 3. - - - - 담배

현행	개정
제5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 장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 에 대하 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납세의무자) ①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 에 대하여 담배소 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 - - - - - - <u>담배</u> - - - - - - - - - -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자의 휴대 품 또는 타송품·별송품으로 <u>제조 담배</u> 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 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④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방 범외의 방법으로 <u>제조담배</u> 를 제조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 한자 또는 반입한자가 각각 담배소 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 - - - -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 표준은 <u>제조담배</u> 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과세표준) - - - - - - - - - <u>담배</u> - - - - - - - - - -
제57조(세율) ① <생략> 1. 흡연용의 <u>제조담배</u> 가~라 <생략> 2. 씹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650원	제5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 - - <u>담배</u> 가~라 <현행과 같음> 2. - - - <u>담배</u> 3. - - - - <u>담배</u>

현행	개정
② <u>제조담배</u>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u>제조담배</u>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2 <생략> 제59조(<u>제조담배</u>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를 제조장 또는 모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생 략 > 1 ~ 2 < 생 략 >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u>제조담배</u>의 품종 및 주생산 <u>제조담배</u>의 품종 4. < 생 략 > 5. <u>제조담배</u>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u>제조담배</u>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u>법인등기부등본</u> 8. <u>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사본</u>	② <u>담배</u>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59조(<u>담배</u>의 반출신고)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 - - - - - - - - - -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u>담배</u> - - - - - - <u>담배</u> - - - - - 4. <현행과 같음> 5. <u>담배</u> - - - - - 6. <u>담배</u> - - - - - - - - - - < 삭 제 > < 삭 제 >

현행	개정
제61조(기장의무) 제1항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 의 제조·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 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기장의무)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 - - - -
제62조(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한 <u>제조담배</u> 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 라 안분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납부등) ① - - - - - - - - - - - - <u>담배</u> -
② 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수입판매 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 구역에서 반출할 <u>제조담배</u> 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 - - - -
③ < 생략 >	③ < 현행과 같음 >
④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는 <u>제조담배</u> 의 품종·수량· 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u>담배</u> -
제63조(가산세) ① < 생략 > 1~4 < 생략 > 5. 제62조 규정에 의한 시군별 <u>제조 담배</u> 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제63조(가산세) ① < 현행과 같음 > 1~4 < 현행과 같음 > 5. - - - - - <u>담배</u> - - - - - - - - - -

현행	개정
② < 생략 >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u>제조담배</u>를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 생략 > 3.부정한 방법으로 법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u>환급</u>을 받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u>제조담배</u>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4조(납세담보) ① < 생략 >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u>제조담배</u>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 생략 > ② 소·폐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	② < 현행과 같음 > 1. - - - - - <u>담배</u> - - - - - - - - - - - - - - - 2. < 현행과 같음 > 3. - - - - - - - - - - <u>환부</u> - - - - - ③ - - - - - - - - - - <u>담배</u> - - - - - - - - - - 제64조(납세담보) ① < 현행과 같음 > ② - <u>담배</u> - - - - - - - - - -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 현행과 같음 > ② - - - - - - - - - - - - - - -

현행	개정
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 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읍·면장 - - - - - - - - - -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 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u>세액이 그 세액에</u>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 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한다.	제71조(가산세) - 세액에 그 세액의 - - - - - - - - - - - -
제75조(과세표준) ① < 생략 > ② < 생략 > 1~4 < 생략 > 5. <u>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u> <u>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u> <u>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u>	제75조(과세표준)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4 < 현행과 같음 > 5.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u> <u>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u> <u>의 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u>
제76조(세율) ①~③ < 생략 > 1. < 생략 > 2. <u>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u> <u>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u> <u>1000분의 50</u>	제76조(세율) ①~③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u> <u>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u> <u>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u> <u>분의 50</u>

현행	개정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과세대상</th><th>과세기준일</th><th>납기</th></tr><tr><td>건축물</td><td>매년5월1일</td><td>매년6월16일 ~6월31일</td></tr><tr><td>토지</td><td>매년6월1일</td><td>매년10월16일 ~10월31일</td></tr></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1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table><tr><th>과세대상</th><th>과세기준일</th><th>납기</th></tr><tr><td>건축물</td><td>매년6월1일</td><td>매년7월16일 ~7월31일</td></tr><tr><td>토지</td><td>매년6월1일</td><td>매년10월16일 ~10월31일</td></tr></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1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